

그리움에 운다...코로나 생이별

유학생·이주노동자 등 하늘길 막히고 자가격리에 가족 만남 포기
'선화장 후장례'에 부모 손도 못잡아보고 유리벽 너머 '애절한 작별'

"2020년 1월에 태어난 딸을 한 번도 안아보지 못했어요. 코로나가 심했던 2년 전에는 방글라데시로 가는 비행기가 아예 없었고 지난해 항공 노선이 생긴 뒤에는 오미크론 바이러스 확산 등으로 자가격리 기간을 가져야 하는데 학기 일정 때문에 그만큼의 시간을 낼 수 없어 딸 아이 얼굴을 여태껏 보지 못하고 있어요."

조선대학교 컴퓨터공학 박사과정에 재학중인 알람무함마드(39·방글라데시)씨는 한국 나이로 3살이나 된 딸의 얼굴을 사진이나 영상통화로 본 게 전부다.

너무 보고 싶은 딸이지만, 코로나로 여태껏 생이별하고 있다. 딸이 태어난 해인 2020년 코로나19가 발병했을 때에는 방글라데시로 가는 항공 노선이 끊겨 고국으로 돌아갈 길이 막혔다. 지난해 말부터 항공 노선이 생겼지만 방역 수칙이 바뀌면서 여전히 고국행을 미루고 있다.

무함마드씨는 "한 학기를 마치고 가려했는데 오

미크론 바이러스 확산으로 방역수칙이 바뀌어 양국 모두 입국할 때 자가격리 기간을 가져야 하는데 학사 일정을 고려하면 시간이 부족하다"며 "딸이아가 너 무나 보고 싶다"고 울상을 지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데,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의 확산세까지 더해지면서 국내·외 유학생 및 이주노동자들의 생이별이 길어지고 있다.

코로나19로 닫혀있던 국경이 지난해부터 열리는데, 국내에서도 위드코로나 시행 등으로 해외에 있는 가족 간 만남이 이뤄지기가 쉬웠지만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기약없이 미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에서 외국으로 나가는 유학생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공부 중인 유학생들도 연말연시 국내 입국을 검토했다가 자가격리 기간에 따른 부담과 확진 판정으로 인한 입국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우려가 겹치면서 만남을 포기하고 눌러앉아있는 형편이다.

4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해외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에 유학 중인 한국인 학생은 15만 6520명. 대부분의 유학생들이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가족들과 생이별을 겪고 있는 처지에 놓였다. 미국에서 유학 중인 A(22)씨도 "연말연시 부모님들과 함께 보내려 비행기 까지 예매했었는데 자가격리, 오미크론 확산 등을 우려해 취소했다"고 말했다.

코리아 드림을 품고 국내에 입국한 이주노동자들도 답답하기만 하다.

비자 기간이 남아있어 고향에 다녀 올 수 있는데도, 자가격리 기간이 발목을 잡았다. 출국과 입국 과정에서 10일 간의 자가격리 를 해야하는데 이 비용이 100만 원을 훌쩍 넘어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캄보디아 출신으로 지난 2010년 귀화해 캄보디아어 통역 사무실을 운영 중인 박미향(38)씨에게는 이 같은 이주노동자들의 고충 상상이 있다.

박씨는 "2년 넘게 이어진 코로나로 고향에 갔다 오려고 했던 이주 노동자들이 입국 후 자가격리를 해야 하면서 출국을 포기했다. 월급 대부분을 고향으로 보내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자가격리 비용

150여 만원은 크나 큰 부담"이라며 "또 돈은 별만큼 벌었다며 그리운 고향에 가겠다는 이주 노동자들도 고국에서 자가격리를 하려면 호텔비 등을 자비로 부담해야해 자가격리 기간이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분들이 많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중인 위중증 고령 환자들의 가족들은 자칫 부모의 생전 마지막 모습도 못보고 영원히 이별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까 안절부절하고 있다.

현재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진 사망자에 대한 장례 절차로 '선(先)화장, 후(後)장례' 방침을 정해놓고 있다. 유족들은 고인이 된 부모의 손 한번 잡아보지 못한 채, 유리문 틈으로 고인의 얼굴을 잠시 마주한 뒤 떠나보내야 하는 형편이다.

한 코로나19 위중증 병상 의료진은 "유리문 사이로 부모님에게 절을 하며 울분을 터트리는 유족들을 볼 때면 울음이 멈추질 않는다"고 말했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사망자의 존엄을 유지하고 유족의 애도를 보장하면서 방역 측면에서도 안전한 방향으로 코로나19 사망자의 장례 지침을 개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본인 업체 숨기고 수의계약
기대서 광주 북구의원 기소

광주시 북구의회 기대서 의원이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임을 알리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의계약을 따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기 의원을 최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기 의원은 지난 2018년 7월부터 지난해까지 본인이 실제 운영하는 건설업체임을 알리지 않고 북구청과 10차례에 걸쳐 917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맺은 혐의다. 기 의원에 대한 재판은 형사 7단독 이호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현행법(지방계약법 33조)은 '지방의회 의원,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사업자일 경우 해당 지자체와 영리 목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 의원은 그러나 이를 알리지 않고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기 의원은 북구청 회계과에 시설보수공사·도로포장 등의 수의계약에 예산을 집행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 의원은 해당 건설업체에 대한 실질적인 운영 여부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북구 공무원들과 다른 주장을 펼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학원·독서실 등 방역패스 제동 걸렸다

법원 "학습권·직업 자유 침해"

1심 선고될 때까지 효력 정지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학원과 독서실 등 교육시설에 적용하려는 정부 정책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방역패스를 둘러싼 갈등 속에 백신 미접종자의 손을 들어준 법원의 첫 판단인데다, 이날 10일부 터 백화점·마트까지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하려는 시점에 나온 결정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 부장판사)는 4일 함께하는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작년 12월 3일 보건복지부가 내린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중 학원 등과 독서실, 스타

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하는 부분은 행정소송 분안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이 일시 정지된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의) 처분은 사실상 백신 미접종자 집단이 학원·독서실 등에 접근하고 이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미접종자 중 학원·독서실 등을 이용해 진학·취직·자격시험 등에 대비하려는 사람은 학습권이 제한돼 사실상 그들의 교육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직접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백신 미접종자라는 특정 집단의 국민에 대해서만 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려면 객관적이고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한다"며 "백신 접종자의 이른바 돌과 갇연도 상당수 벌어지는 점 등에 비추보면 시설 이용을 제한해야 할 정도로 백신 미접종자가 코로나19를 확산시킬 위험이 현저히 크다고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고3, 방역패스 6개월 유효기간 적용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 2004년생들은 오는 3월부터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유효기간을 적용받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4일 백브리핑에서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적용받는 대상은 3차 접종 대상자로 이해하면 된다"며 "2004년생은 올해부터 3차 접종 대상이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 대상"이라고 밝혔다.

지난 3일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 제도가 시행되면서 기본 접종을 완료한 지 6개월(180일)이 지났는데도, 3차 접종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접종 완료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18세 이하 청소년은 아직까지는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방역패스 적용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지만, 정부는 오는 3월부터는 12~18세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3차 접종 가능 연령으로 포함된 2004년생은 3월부터 방역패스와 더불어 유효기간도 함께 적용된다는 설명이다.

접종 일정에 따라 가장 빨리 1차 접종을 받은 2004년생은 지난해 10월 18일 접종자로, 이들의 접종 증명은 2차 접종 완료 후 180일째가 되는 오는 5월 7일까지만 유효하다.

3차 접종을 받은 연 접종한 당일부터 유효기간을 적용받지 않는다.

기본 접종을 완료한 지 3개월이 지난 2004년생을 대상으로 지난 1일 0시부터 3차 접종 사전예약이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점검

4일 오후 광주시 북구 재활용선별장에서 북구청 청소행정과 자원순환팀 직원들이 지난해부터 시행된 전국 단독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에 따라 수거해온 일반 플라스틱과 투명페트병 현황점검을 하고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병상의 아버지 따뜻한 밥 드시게 해 주세요”

옛 전방 내 요양병원 식당 행정집행 반발 국민청원 글 올려

지난해 연말 진행된 옛 전남방직 공장 내 요양병원 식당에 대한 법원의 행정집행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병원에 입원중인 환자의 가족은 최근 병원 식당을 이용할 수 없다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호소하고 나섰다.

20여년 현직 간호사로 근무했다는 40대 후반의 교포라는 글쓴이는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병상의 아버지께 따뜻한 국물과 밥 좀 드 시게 해 주세요 - 마지막 호도에 나선 교포 간호사

의 호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안정된 식사는 최악의 환자나 중증 당뇨 환자나 치매 환자 등에게는 치료의 한 방편인데, 땅주인이 갑자기 병원식당의 기능을 마비시킬 정도로 어떤 급한 사항이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호소연 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29일 해당 요양병원에서 구내식당 집기와 가재도구, 비상식량 등을 들어 내는 등 강제집행을 했다. 전남방직이 지난해 명

도(건물을 비워 넘겨줌)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은 뒤 법원에 해당 식당에 대한 강제 철거 집행을 요청한 데 따라 이뤄진 조치로, 지난해에 만 병원장실·행정실·식당 등 3번에 걸쳐 집행이 이뤄졌다.

그는 "한국과 외국에서 간호사로 많은 병원에서 근무해 봤지만 지금까지 입원한 환자가 있는 병원의 식당을 폐쇄시키는 것은 아직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광경이었다"면서 "인도적인 차원의 최소한의 배려조차 포기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은 다음달 2일까지 마감이며, 4일 오후 6시까지까지 1000명이 넘게 동의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 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1개> *QR코드:법원경매정보 웹으로 접속됩니다.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2021타경 7342	2011	사용면적:종소 801호 [동선동, 라인아파트] 등 면적:33배0145 차영:에쿠스 연식:	자동차	10,000,000	모판:광산구동영정길65-159대대영씨연피[062-952-2252]
2021타경 75055	1	사용면적:동구 산수동 경향로383[산수동] 등 면적:22사1385 차영:제네시스 연식:	자동차	9,000,000	모판:광산구우신천변길67-17[서창]다리주차장.010-8466-0864.

[기타]

2021타경 73684	1	광산구 문수동 14-10 47㎡ 광산구 어등대로581-25, 3층 303호 [문수동, 명진주택] 22.17㎡	도로 주택	35,275,000 35,275,000	일괄매각
2021타경 74298	1	곡성군 입면 제물리 1245-1 2256㎡ 제외외수전설비 등 2식	공공용지	424,103,750	일괄매각,제외외계기구포함,기계기구대부분소각
2021타경 7526020021	1	곡성군 입면 정계동로 975-16 단층 358.41㎡ 부속건물 근린시설[사무실, 수속, 화장실 및침고]135.11㎡	근린시설	424,103,750	모판:광산구우신천변길65-159대대영씨연피[062-952-2252]
타경 77686	1	곡성군 입면 제물리 1245-7 1384㎡	공공용지	35,275,000	모판:광산구우신천변길65-159대대영씨연피[062-952-2252]
[총복]		곡성군 입면 정계동로 975-16 단층 364.80㎡ 제외외호이스트 1식 기계기구 7	공공	35,275,000	모판:광산구우신천변길65-159대대영씨연피[062-952-2252]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특별매각조건
①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하는 최고매수신청인이 매각결정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가능한 경우
② 공유자가 민사집행법 제140조에 의한 우선매수신청을 한 경우 그 매수신청 후 최초로 진행된 매각결정에 최고매수신청인의 입찰이 없는 경우 그 공유자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결정에서는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당해 매각에 다른 매수신청인이 없는 경우 최저매각가격을 공유자 우선 매수신청인으로 본다.
2. 매각기일 : 2022. 1. 19. [수] 10:00
3. 매각결정기일 : 2022. 1. 26. [수] 16:00

4.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입찰장
5. 매각방법
① 입찰장에 비추어 가압입찰표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봉투에 투입하여 넣는다. 매수신청의 유효기간은 최고매수기일의 1일(100분)에 해당하며 보증금의 자기납부 또는 현금 증빙하거나 지급보증계약서를 제출한 문서[결정 보증서]를 준비하여 넣는다.
② 입찰의 이상·공통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목록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③ 입찰봉투의 투입이 완료되면 곧바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와 가격으로 입찰한 사항을 최고매수신청인으로 정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항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중단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한다.
④ 최고매수신청인과 차순위매수신청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결과 통보되는 즉시 반환한다.
6. 매각가 및 대금납부
① 최고와 가격으로 입찰한 사항에 대하여 매각결정일매 매각가격의 여부를 확정적으로 결정하고, 매각결정일이 확정된 대금지급일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대금지급기한은 종상 매각결정일에서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된다.
② 지정된 대금지급일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매각권을 상실한다. 다만, 매각결정일로부터 지정된 날의 3일만까지 종전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지연이자, 비용을 납부하면 대금납부에서 유예하며, 따라서 매각은 실시하지 아니한다.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지상권, 가압입찰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지상권이나 가압입찰을 위해서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등록세영수필통지서를 환부하고, 국민주택권설정등기를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위 등기를 등록하여 준다.
②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책없는 부동산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8. 주의사항
① 매각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최선위의 지상권 등이 설정된 날보다 먼저 존속권설정신청을 하고 거주하고 있는 입찰자이나, 사업자특정사항을 가진 입찰자가 있을 때에는 그 입찰자로부터 매수인이 인수하여 있는 경우 가 생길 수 있다.
② 입찰신청의 유효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각결일 1주일 전부터 매각결정 장소, 현황조사보고서 및 결정명세서의 사본 등을 우편발행 민사집행신청과에 비치하거나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고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신 후 입찰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③ 특별매각조건에 내용은 매각결정명세서의 열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결정에 나오실 때에는 입찰표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필요하신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사원인 입찰보증금 증부한 위임장을 반드시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소유권이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매수신청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결정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하여야 매각이 허가됩니다. 단, 도시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에 소명할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⑥ 공고된 물건에 매각결정 전에 매수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이 취소, 경매지연 경우, 또는 매각결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⑦ 신로에 공고되는 물건의 최초의 매각결정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속행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로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법원에 비치되어 입찰대상은 출찰이전에 게시된 매각결정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⑧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책없는 부동산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 http://www.courtaction.go.kr [공매공고 - 매각공고 섹션]
* 대한민국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원상 제공하도록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을 국민민의를 위한 배려로 제공한 것으로,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고 이를 이유로 매각결정이 상환이나 취소, 대금결정신청이나 손해배상의 청구 등을 할 수 없으므로, 관심있는 물건을 구매하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게시된 매각결정의 공고나 비추어 매각결정명세서 등을 꼭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22. 1. 5.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박종희